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 보고서

2010.04.16.
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0. 4. 6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0. 4. 9.
- 다. 상정일자 : 제152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(2010.04.16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제안설명자 : 강희천 교육지원과장

가. 제안이유

현재 우리 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통상 직무상의 행위로서 구체적인 지급대상·방법·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향후 지속적인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개정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1) 마포구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차수 명시(안 제7조 5항)
 - 위원의 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
- 2) 장학금의 종류(안 제15조 신설)

- 장학금의 종류를 지역인재육성, 성적우수, 복지, 특기장학생으로 정함
- 3) 장학생의 자격(안 제16조 신설)
 - 장학생별 지급대상자의 자격기준을 명시함
 - 4) 장학생의 선발인원(안 제17조 신설)
 - 각급 학교별 선발인원 명시
 - 5) 장학금액(안 제18조 신설)
 - 장학생별 장학금액 명시
 - 6) 장학금의 지급(안 제19조 신설)
 - 선발된 후부터 해당학년 초에 지급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0 본 조례안은 「공직선거법」 제112조제2항제4호에 “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·방법·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”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바, 종전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장학금의 종류 및 자격 등을 조례에 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,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0 본 조례안 중 수정의견을 보고 드리면, 안 제16조제4호에 “특기장학생은 영어, 수학, 과학 등 교과목별 각종 경시대회와 문화, 예술, 체육 분야의 시 단위 공인대회에서 입상한 중·고등학생으로 한다.” 고 규정되어 있는바, 문화, 예술, 체육 분야의 시 단위 공인대회에서 시 단위가 광역 지자체의 시·도인지 기초단위 지자체의 시·군·구인지 명

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: 없음